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기간 요건(90일)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조치 직전 근로자를 채용하여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되, 고용위기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

나. 유급휴직 조문 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호)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하여 금품 지급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유급휴직의 경우는 현재 금품지급 규정이 없어, 금품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파견·사내도급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파견·도급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 또는 도급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률과 관계없이 파견·도급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제2항)

현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분리되어 있음. 이에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신고 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

마.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재 무급휴직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총근로시간을 100분의 20 초과하여 단축)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무급휴직 지원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급휴직을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함

바. 무급휴직 지원 사업장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77%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후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위기 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모두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함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안 제38조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로 개정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한”을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도과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90일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부여하는”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용 사업주가 소속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파견근로 중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을 주는 사업주(이하 “도급 사업주”라 한다)가 소속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도급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수급 사업주”라 한다)가 도급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0조제2항 중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고용유지조치”를 “다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제21조제2항의 180일(고용노동부장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일수로 한다)을 이미 지원받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 1명 이상의 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8조제4항 후단 중 “피보험자의 자녀 수”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u>고용한</u>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 <u>고용유지조치</u> ”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 <u>고용유지지원금</u>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 ----- ----- ----- <u>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도과한</u> ---- ----- ----- ----- ----- ----- ----- ----- ----- ----- ----- . 다만, 제18조 제2항 각 호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u>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u>

1. (생략) 2. 삭제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② (생략) <신설> <신설>	간을 90일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3. -----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용 사업주가 소속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파견근로 중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을 주는 사업주(이하 “도급 사업주”라 한다)가 소속 피보험자를 대
--	---

	<u>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도급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도급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u>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생략)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②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 ----- ----- ----- ----- -----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2. ----- ----- -----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 ----- ----- ----- ----- ----- ----- -----

<신 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
히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제21조제2항의 1
80일(고용노동부장관이 제21
조제3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
에는 연장한 일수로 한다)을
이미 지원받은 10인 미만 사
업장은 피보험자 1명 이상의
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
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
급 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
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
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
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
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
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
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
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